

 신안산대학교	조기(미출석)취업자에 관한 운영 규정	규정 번호	2-4-22
		제정 일자	2016. 10. 24.
		개정 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졸업 이전에 취업이 정해져 산업체에서 재직 중인 자의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재학 중인 “조기(미출석)취업자”에게 적용한다. 단,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 해외 취업자의 경우 조기(미출석)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1.14.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조기(미출석)취업자”라 함은 졸업 이전에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되어 졸업 최종학기에 근무 중인 자를 말한다.

제4조 (인정학점) 졸업 최종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전부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 (대상) 조기취업으로 인정받아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의 신청학점이 졸업요건에 충족된 자
3. <2019.7.17.삭제>

제6조 (출결·출석인정및허가) ① “조기(미출석)취업자”는 취업확정 후 7일 이내에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산업체 재직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기(미출석)취업자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증명서로 확인된 취업일로부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학기 개시 이전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은 학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과 조기취업학점인정평가위원회에서는 취업증빙서류를 심의한 후 조기취업학생명단과 회의록, 조기(미출석)취업자학점인정신청서, 재직확인(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2024.3.20.>

③ 교학처장은 “조기(미출석)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심의결과를 해당학과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해당학과 학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2024.3.20.>

④ “조기(미출석)취업자”는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종료 1주일 전까지 산업체평가서(중간, 기말), 출근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산업체에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보험 가입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2019.7.17.개정>

제7조(성적처리및학점인정) ① “조기(미출석)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과목의 성적처리는 교과목별 성적처리방법에 따른다.

② 조기(미출석)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는 출근부, 산업체평가서(중간, 기말) 및 학과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8조(취업처변경및퇴직) ① “조기(미출석)취업자”의 이직 시 재취업시까지, 퇴직 시 퇴직일 다음날부터 수강교과목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기(미출석)취업자”의 이직·재취업·퇴직 시 해당학과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학과에서는 담당교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자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학점취소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11.14.개정>

1. 조기취업 기간 중 취업한 산업체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2. 허위로 조기취업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자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단, 직종 특성상 건강보험가입이 불가한 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기취업학점인정평가위원회 및 졸업사정회의 절차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2021.12.23.개정>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출근부, 산업체평가서(중간, 기말) 및 학과평가기준에 못 미친 자

제10조(학점관리) 조기(미출석)취업자의 성적은 성적전표 “비고”란에 “조기(미출석)취업자”라 표기한다.

제11조(조기취업학점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취업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과별로 조기취업학점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속 학과의 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학과 교수 4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학기종료 1주일 전까지 “조기 취업자”의 성적평가 근거자료 및 출석, 재직확인(증명)서, 출근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을 승인 요청한다. <2019.11.14.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미출석)취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인 2016학년도 2학기 조기(미출석)취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